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 명시〉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490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 명시 (안 제5조의3 삭제 및 제26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25.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 명시 (안 제5조의3 삭제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다만 부정행위의 경중, 계약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약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음 (현행 제5조의3) <u><신 설></u>	<u><삭 제></u>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1.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4.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중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 공무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현행	개정안
<u><신설></u>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 제26조의2 제1항 신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한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 제26조의2 제2항 신설)

공공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¹⁾.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1)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등

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음.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반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²⁾, 그 외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단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에서도 낙찰자 결정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안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제2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⁵⁾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됨⁶⁾.

4)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 이는 계약보증금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담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반면 개정안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일반적으로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안 제1호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시행령에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보증금상당액이 계약금액의 10%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⁸⁾, 안 제1호를 현행 시행령과 같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8)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또는 상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안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⁹⁾.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안 제2호를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유사한 취지에서 동법 제12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고¹⁰⁾, 동법 시행령에서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9)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10)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11)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안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국가계약법」 제5조의2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청렴계약”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¹²⁾, 안 제4호의 사유를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계약담당공무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안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서 계약상대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추가한다면 안 제5호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12)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계약의 해제·해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개정안에 따른 사유를 일치시키고, 「지방계약법」의 조항을 차용함에 따른 일부 누락 사항을 보완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 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② 안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 현행 시행령과의 일치를 위해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하는 경우를 ‘계약보증금상당금액’에 도달하는 경우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③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이행지체 귀책 여부 등 구체적 요건이 미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 행정 등이 우려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① 안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구조이므로 낙찰자 결정 취소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삭제가 필요하며, ②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¹³⁾ 이를 법률에 상

13)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

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③ 국가계약이 국가와 사인 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됨을 고려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권¹⁴⁾도 함께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④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권¹⁵⁾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14)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15)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삭제> 제26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

현행	개정안
	<u>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u> 3. <u>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u> 4. <u>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u> 5. <u>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6. <u>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7. <u>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u> ② <u>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u> 1. <u>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u>

현행	개정안
	<u>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u> 2. <u>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문의처

02)6788-5160